

---

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 
New Start Plan 2018

---

2018. 3.

관 세 청  
심 사 정 책 국

# 순서

I. 추진배경 및 주요성과 .....	1
II. New Start Plan 2018 세부내용 .....	3
1.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/ 3	
2. 납기연장·분할납부 / 4	
3. 수출환급 지원 / 6	
4.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/ 7	
5. 체납자 회생지원 / 8	
III.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.....	9

## 1. 배경 및 주요 성과

### 1 추진 배경

□ 3년만의 무역 1조달러 재달성 등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\*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

\* [중소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] ('14) 82 → ('15) 78 → ('16) 74 → ('17) 71

○ 또한, 포항 지진.대형 태풍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

⇒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시행해 온 세정지원 정책 지속 추진\*

\* '08년부터 '17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연장 시행(금년은 11차)



### 추진 방향

- ◇ 일시적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속성.지속성 있는 지원정책 시행
- ◇ 자연재해.대형사고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희생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 정책 실시

## 2 | '17년 주요 성과

□ **[납기연장]** 납부세액(수정·경정·보정 포함) 과다발생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해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업체 지원\*(228개 / 74억원)

\*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(최대 6회)

□ **[환급지원]** 환급제도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다납부 세액 알려주기, 未환급 정보 제공(3,576개 / 1,262억원)

□ **[체납자회생 지원]** 체납액 일부 납부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 및 수입물품 통관허용(855명 / 3,088억원)

【 연도별 「New Start Plan」 실적 】

구 분		'14년	'15년	'16년	'17년
① 납기연장·분할납부		289억원	285억원	197억원	74억원
② 환급 지원	세관장 직권환급	85억원	217억원	49억원	28억원
	미환급 정보제공 실적	2,349억원	3,182억원	3,520억원	1,185억원
	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 확대	4,260개	4,216개	4,257개	4,443개
	자동 간이 환급	61억원	64억원	55억원	49억원
③ 체납자 회생 지원	한국신용정보원 통보유예	201명 (300억원)	279명 (501억원)	276명 (587억원)	262명 (2,293억원)
	수입통관 허용	1,362명 (534억원)	718명 (698억원)	575명 (1,266억원)	593명 (795억원)
④ AEO 공인획득 지원		65개 (11.3억원)	46개 (7.7억원)	32개 (5.6억원)	-
합 계		3,568억원	4,955억원	5,354억원	4,424억원

## II. 「New Start Plan 2018」 세부내용

### 1 재난지역\*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

\* ‘특별재난지역’ 선포지역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소재지역 별도 선정 가능

#### ① 납기연장.분할납부 지원

- 해당 업체 수입물품의 **납부세액 및 추징세액**(수정·보정세액 포함)에 대하여 '17년도 납부세액의 **50% 범위내\***에서 **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.분할납부** 지원

\*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개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

##### < 적용 대상 >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
- ② 최근 2년간 **관세범칙**(통고처분 포함) 및 **체납** 사실이 없을 것 다만,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(국세.관세 체납 포함)
- ③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(+)이거나,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(단,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적용 제외)

#### ② 관세조사 유예.연기

- 해당 업체가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,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하여 기업회생 지원

#### ③ 관세환급 특별지원

- 해당 업체 환급신청건은 P/L(Paperless)로 전환하고,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 지급 요청(先지급 後심사)

### ① 신고납부 세액에 대한 납기연장·분할납부

- **[필요성]**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경영 위기극복 및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
- **[대상]**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업체로서 공통·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#### [공통요건] 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

1.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
2. 최근 2년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,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(국세·관세 체납 포함)
3.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(+)이거나,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(단,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적용 제외)

#### [추가요건] 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또는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- 가.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
  - 나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
2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

- **[내용]** '17년도 납부세액의 50% 범위내\*에서 최대 6개월 이내 **無담보 납기연장** 또는 **분할납부**(최대 3회) 지원

\* 납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적개념이며 건별 적용금액이 아님

- **[절차]** 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,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

## 2] 추징세액(보정·수정신고 포함) 등에 대한 납기연장·분할납부

- [필요성] 세관장의 고액 추징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위기극복 지원
- [대상] 추징세액·과태료 납부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이 되어 부도·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로서 공통·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### [공통요건] 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

1. 최근 2년간 관세법칙(통고처분 포함)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(국세·관세 체납 포함)
2. 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

### [추가요건] 다음 호의 하나를 충족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- 가.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
  - 나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고용률 100분의3 이상
2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

- [내용] 최대 1년(과태료는 최대 9개월)의 범위 내에서 **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**(최대 6회) 지원
  - 다만, 공통요건 중 제1호의 법칙사실(통고처분 포함) 또는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부과액의 5/100를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분할 납부 허용 (일괄 납기연장은 불허)
- [절차] 희망업체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, 세관장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 준용

### ① 과다납부 세액 찾아주기(세관장 직권 환급)

- [필요성] 중소기업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, 인력부족 등으로 과다 납부하고도 쟁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경쟁력이 낮음
- [내용] 연중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직권 환급제도 운영

### ② 환급정보 자동안내

- [필요성]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제도의 이해부족,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
- [내용] 수출신고시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, 수출업체(또는 관세사)에게 실시간 환급제도 자동안내 실시

### ③ 자동환급

- [필요성]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신고절차와 환급절차를 일원화하여 환급비용 절감
- [내용]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 지급

### ①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 제도 도입('18.7~)

- [필요성] 소요량 산정 및 적용 오류로 인한 대규모 과다 환급금 추징은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- [내용] 환급신청 전 소요량 적정여부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을 예방하여 추징위험 완화

### ② 수출갈음 확인서류 발급 간소화

- [필요성]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로 수출기업 환급비용 절감과 민원편의 도모
- [내용]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자동 수리제도 도입('18.7~) 및 전자문서 교부대상에 적재확인서 포함('18.3~)

### ③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

- [필요성] 중소기업에게 신속.간이한 수출환급 확대로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
- [내용] 신규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\*으로 지정('18년, 신규 26개)

\* ('14) 4,260개 → ('15) 4,216개 → ('16) 4,231개 → ('17) 4,443개 → ('18) 4,469

### □ 채납처분.채납정보 제공 유예

- [필요성]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 부여\*
  - \* 現 5백만원 이상 채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능
- [대상] 채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채납처분 유예\*를 받은 업체(개인 포함)
  - \*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(국세징수법 제85조의 2)
- [내용]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\*, 재산압류 등 채납처분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납사실 통보 유예\*\*
  - \* [수입통관 허용] : ('15) 718명 → ('16) 575명 → ('17) 593명
  - \*\* [채납사실 통보 유예] : ('15) 279명 → ('16) 276명 → ('17) 262명

### □ 일시 채납자 분할납부 취소 유예

- [필요성] 과실 또는 착오로 발생한 일시적 채납업체에 대하여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
- [내용] 분할납부 중인 세액의 채납발생시\*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잔여금액 분할 납부 유지(채납금액은 납부)
  - \* (기존) 분할납부 금액에 대하여 15일 이내 일괄납부

### Ⅲ.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(세관)

#### 납기연장 . 분할납부

구분	부서명	담당자	전화번호
인천세관	심사정보1과	권주희	032-452-3322
서울세관	심사정보과	이성우	02-510-1312
부산세관	심사정보과	조정미	051-620-6378
대구세관	납세심사과	이혜영	053-230-5311
광주세관	납세심사과	남혜란	062-975-8062
평택세관	납세심사과	이길숙	031-8054-7112

#### 체납자 회생지원

구분	부서명	담당자	전화번호
인천세관	심사정보2과	이정현	032-722-4061
서울세관	체납관리과	곽경훈	02-510-1331
부산세관	체납관리과	이동훈	051-620-6399

#### 환급 지원

구분	부서명	담당자	전화번호
인천세관	심사정보1과	정상열	032-452-3326
서울세관	환급심사과	강영진	02-510-1361
부산세관	심사정보과	윤숙임	051-620-6389
대구세관	납세심사과	표경희	053-230-5310
광주세관	납세심사과	문병광	062-975-8061
평택세관	납세심사과	하승민	031-8054-7111